'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' 입주자 모집공고 1

※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,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본 아파트는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이 적용됩니다.

-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.10.24.입니다.(청약자격조건의 기간, 나이,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은 편다기준입니다.)
- 해당 주택건설지역(대전광역시) 서구은 「주택법」, 제6조에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역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, 본 아파트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.
- 본 아파트는 수도권 및 비투기과열지역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. 단,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,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.
-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원 속한 지는 단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19.10.24.) 현재 **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,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인 청약통장보유 기준자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(양육, 청약자녀부양)[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자격이외인, 외국인 포함]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. 다만 청약 신청자가 출산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「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-3793(2013.03.20.), 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됩니다.**
- 본 아파트는 대전광역시 3개월 이상(2019.07.24. 이전부터) 계속 거주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되므로 거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-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이 개정 · 시행되어 제2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제4조 제1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 장기체류 체류자출국 후 계속하여 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여 국외 거주 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 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 · 당첨 · 계약 시 주택법 제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.(입국 후 7일 이내 등일국가 체류국 시 해당국가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)
  - 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, 해외에 장기간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,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)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청약에 해당되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(단,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, 출장, 파견 등은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신청 청약이 가능합니다.)
  - 가.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하게 되며
  - 나.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우선공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청약하게 되며
  - 다.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90일을 초과한 경우는 해당지역, 기타지역 모두 청약불가
-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호의3, 제2조의4에 의거 '세대' 및 '무주택세대구성원' 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.
  - "세대"란, 다음 각 목의 사람이 하나 "세대원"으로 구성된 집단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)
  - 가. 주택공급신청자
  - 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  - 다. 주택공급신청자 및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)(예부모, 장인·장모, 시부·시모, 조부·조모, 외조부·외조모 등)
  - 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)(예아들, 딸, 사위·며느리, 손자·손녀, 외손자·외손녀 등)
  - 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 -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(예건호녀 사 등)
  - "무주택세대구성원"이란,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 구성원
-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조 제1항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정해 청약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.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.
-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3호에 의거 투기과열지구, 청약과열지역, 수도권 및 광역시 주택청약 조정지역 이하 "분양권등" 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,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(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참조)
  - ※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(국토교통부령 부칙 제2조, 제6이5호, 2018.12.11. 시행)
    -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 시행일(2018.12.11.) 이후 입주자모집공고, 관리처분계획(정비사업) 또는 사업계획(지역주택조합)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, '공공주택 체결일' 기준 주택 소유로 봄 (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공 가구 수보다 적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미 발생된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,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는 주택소유로 봄)
    - 2019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되거나 사용승인 받은 주택 또는 분양권 등 (주택가격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조, 제3호 참조)
  - ※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(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, 제6이5호, 2018.12.11. 시행)
    -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 시행일(2018.12.11.) 이후 입주자모집공고, 관리처분계획(정비사업) 또는 사업계획(지역주택조합)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, '공공주택 체결일' 기준 주택 소유로 봄 (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공 가구 수보다 적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미 발생된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,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는 주택소유로 봄)
    - 분양권 등 매수자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 시행일(2018.12.11.)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, 「매매대금 완납일」 (실거래 신고서상) 기준 주택 소유로 봄
- 2009.04.01. 「주택법」 제63조 및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.
-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청약의 방정제 제정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기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  - ※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(www.apt2you.com) 및 국민은행(www.kbstar.com)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  -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(www.apt2you.com)에서 운영하는 "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", 국민은행(www.kbstar.com)에서 제공하는 "인터넷 청약신청 안내"를 활용하시기 바랍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·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.
-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-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주택공급 규칙 제2조 제1호 및 제5조 제1항에 의거 청약 가능
  -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→ 본 주택의 해당소유권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,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청약 가능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19.10.24.) **현재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, 세종특별자치시 거주권한통보자로 기준자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(양육, 청약자녀부양)[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자격이외인, 외국인 포함]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.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「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-3793(2013.03.20.), 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됩니다.**
- 본 아파트는 대전광역시 3개월 이상(2019.07.24. 이전부터) 계속 거주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되므로 거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-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이 개정 · 시행되어 제2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제4조 제1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 장기체류 체류자출국 후 계속하여 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여 국외 거주 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 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 · 당첨 · 계약 시 주택법 제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.(입국 후 7일 이내 등일국가 체류국 시 해당국가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)
  - 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, 해외에 장기간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,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)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청약에 해당되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(단,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, 출장, 파견 등은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신청 청약이 가능합니다.)
  - 가.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하게 되며
  - 나.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우선공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청약하게 되며
  - 다.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90일을 초과한 경우는 해당지역, 기타지역 모두 청약불가
- 2018.12.11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호의3, 제2조의4에 의거 '세대' 및 '무주택세대구성원' 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.
  - "세대"란, 다음 각 목의 사람이 하나 "세대원"으로 구성된 집단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)
  - 가. 주택공급신청자
  - 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  - 다. 주택공급신청자 및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)(예부모, 장인·장모, 시부·시모, 조부·조모, 외조부·외조모 등)
  - 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포함) -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(예건호녀 사 등)
  - "무주택세대구성원"이란,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 구성원
- 본 아파트는 수도권 및 비투기과열지역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. 단,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,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.
-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원 속한 지는 단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19.10.24.) **현재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, 세종특별자치시 거주권한통보자로 기준자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(양육, 청약자녀부양)[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자격이외인, 외국인 포함]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.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「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-3793(2013.03.20.), 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됩니다.**
- 본 아파트는 대전광역시 3개월 이상(2019.07.24. 이전부터) 계속 거주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되므로 거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